



리양시 라이강 환경보호 공정 공사 VS 리양시 우환 환경보호 공정 유한공사 등 상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11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중국 장수성 고급인민법원	사건번호	(2003) 苏民三终字 第010号
판결 일자	2003년 5월 20일	판결 결과	상소 인용 (권리자 승)
원심원고(상소인)	리양시 라이강 환경보호공정 공사		
원심피고(피상소인)	1. 리양시 우환 환경보호공정 유한공사, 2. 왕쉬쿤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 제10조, 제20조, 민법통칙 제134조, 민사소송법 제153조		
영업비밀	가스 오염수 및 폐수 처리 기술		
키워드 (Keyword)	기술비밀(技术秘密), 기술 이전 혹은 기술 양도 (技术转让), 통상 실시 계약(普通许可合同), 전용 실시 계약(排他性许可合同) 사용권(使用权)		

02 사건 개요

리양시 라이강 환경보호공정 공사(이하 '라이강 공사')는 오염수 처리 기술을 가진 회사이다. 1997년 하반기, 라이강 공사는 왕쉬쿤을 업무책임자로 고용하였고, 오염수 처리 기술 접촉자 명단에 왕쉬쿤을 포함시켰다. 1999년 6월, 왕쉬쿤은 자진 사직하고, 리양시 우환 환경보호공정 유한공사(이하 '우환 공사')의 법정대표가 되었다. 라이강 공사의 기술은 '뤄상샤오'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받은 기술인데, '뤄상샤오'가 우환공사와도 계약을 체결하고 오염수 처리 기술을 넘겨주었다.

라이강 공사는 우환 공사의 대표인 왕쉬쿤이 라이강 공사의 명의를 이용하였으며, 라이강 공사의 기술을 사용하여 낮은 가격으로 영업을 하였기에 커다란 손실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심법원에서는 '뤄상샤오'가 라이강 공사에 넘겨준 기술과 우환 공사에 넘겨준 기술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으나, 라이강 공사와 뤄상샤오 간의 계약의 성질을 통상 실시 계약으로 보았고, 왕쉬쿤이 라이강 공사의 기술을 실질적으로 접촉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라이강 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03 주요 쟁점

원심 원고(상소인)



원심 피고(피상소인)

원심 원고는 원고(상소인)인 윈쉴콘과 피고(피상소인)인 튀상박오 사이의 기술 이전 계약은 전용 실시 계약(배타적 사용 허가 계약)이다.

전용 실시 계약에 대한 사실적, 법적근거가 없다.

원심 원고는 윈쉴콘은 비밀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강 공사가 배타적이 사용권을 가진 오염수 처리기술을 자신의 공사인 우환공사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원심 피고들은 라이강 공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

상업비밀 침해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04 판결 요지

라이강 공사와 튀상박오 사이의 오염수 처리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은 전속허가 계약(배타적 사용 허가 계약)이다. 윈쉴콘은 라이강 공사의 직원으로서 라이강 공사의 기술 비밀에 대해 유출금지 및 무단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윈쉴콘이 라이강 공사 재직시절, 취득하였던 기술비밀을 자신의 우환공사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라이강 공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본 1심 민사판결을 취소하고, 윈쉴콘과 우환공사는 LG 물리화학법 오염수 처리기술의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윈쉴콘과 우환공사는 라이강 공사에 배상 및 사죄성명을 게재하여야 한다고 판결을 변경하였다.

05 Key Point

중국에서 최근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데, 영업비밀 관련 판례에서도 환 오염 정화 기술에 관한 비밀이 분쟁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본 사건의 경우에는 '튀상박오'라는 자의 '오염수 정화 기술'을 원심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가 모두 이전받으면서 복잡한 법률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기술 이전을 받을 경우에는, 이전 받는 기술의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고, 전용실시권 혹은 통상 실시권 등 권리의 종류와 기간, 권한의 범위, 비밀 보호 조항 등을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하여 추후 분쟁의 발생 소지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제20조에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계산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① 권리자의 손해액, ② 손실액 계산이 어려울 경우, 침해자가 권리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권리자 라이강 공사의 손실액을 증명할 수 없고, 또한 침해자 우환 공사가 2심 재판에서 수익과 관련한 자료들을 제공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으므로, 침해자의 이익액을 산정할 수도 없었다. 이에, 2심 법원이 왕취쿤과 우환 공사가 권리 침해 행위를 행한 시간과 청구받은 공정의 양 등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라이강 공사의 손실액 10만 위엔으로 결정하였다.

한국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변론의 전체 취지'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